

국유재산 [유상] 사용허가서

(제1쪽)

성 명 :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

사업자번호 : 201-83-00509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(예장동)

재산의 표시(소재지, 지목, 면적)

| 회계구분 | 재산소재지 | 지 번 | 지 목 | | 지적 면적 (㎡) | 허가 면적 (㎡) | 사용용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공부상 | 현황상 | | | |
| 일반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| 509-1 | 전 | 나대지 | 776 | 29.2 | 정화조매설 및 산악구조대 사무소 |
| 환특 | . | 509-3 | 전 | 나대지 | 1,193 | 36 | 산악구조대 초소 |

2016년 8월 일 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[유상]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
 [유상] [무상]
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·수익(이하 '사용'이라 한다)을 허가합니다.

2016 년 8월 일

환경 부 장 관

허 가 조 건

- 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119산악구조대 사무소 및 초소 등으로 한다.
- 제2조(사용기간) 사용기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
- 제3조(사용료)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용허가 표찰의 부착)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, 사용기간, 성명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용허가재산의 보존)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,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.
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사용 시 공원탐방객 등 동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, 인접한 공원관련 시설물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주위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용인의 행위 제한) 사용인은 우리 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 - 1. 사용목적의 변경
 - 2.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
 - 3. 사용허가재산에의 허가내역 외의 시설물 설치
- 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
 - 2.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 - 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 - 4.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